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2013년 12월 10일 ~ 현재

② 장소 각급 학교 내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별지3>, <별지4> 참조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 참조

7. 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없음

진정인 **최기준** (서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1> 교육부 및 교육청 대상 진정 내용

※ 당 사안 진정인

각 단체들 및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 당사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치적 기본권 '내나라'운동본부,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희망의우리학교

박종하(고등학생, 서울특별시)

황법량(고등학생, 광주광역시)

김주영(고등학생, 인천광역시)

유은지(중학생, 경상북도)

전국철도노조가 2013년 12월 8일, 정부의 수서발 KTX 설립이 KTX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2013년 12월 10일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주현우 씨가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하면서 대자보 열풍이 대학교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청소년들, 초중고등학생들도 "안녕들하십니까?" 물으며 대자보 열풍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학교와는 달리 많은 학교들이 청소년들의 대자보를 "허가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단, 강제 철거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허가를 요청받으려 했으나 불허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대자보를 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처벌을 하는 학교, 학부모를 학교에 소환하는 학교, 경찰에 신고를 하는 학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전국의 각 학교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2013년 12월 18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 "최근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정 주장이나 개인적 편견을 학교 내에서 벽보 등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각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고등학교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 경북, 대구 등 각 시·도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의 공문을 그대로 각 학교에 하달하여 실제로 공문 방침대로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생활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문을 통한 방침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학생들이 대자보를 게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각 학교에서 행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헌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을 무시하는 것이며, 교육부는 대자보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으나 "면학 분위기 침해"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제13조에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며,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존중되고 보호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닌 교육기관 및 국가기관에 의해 그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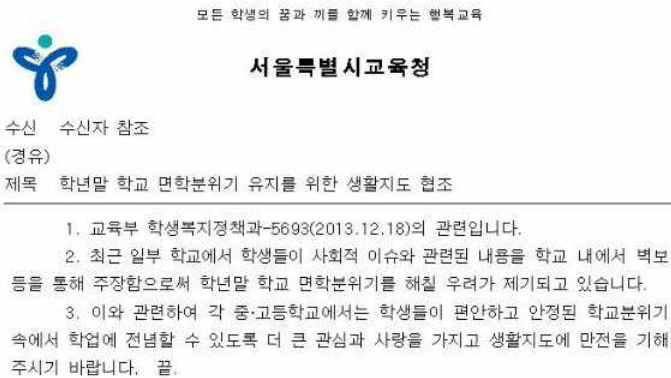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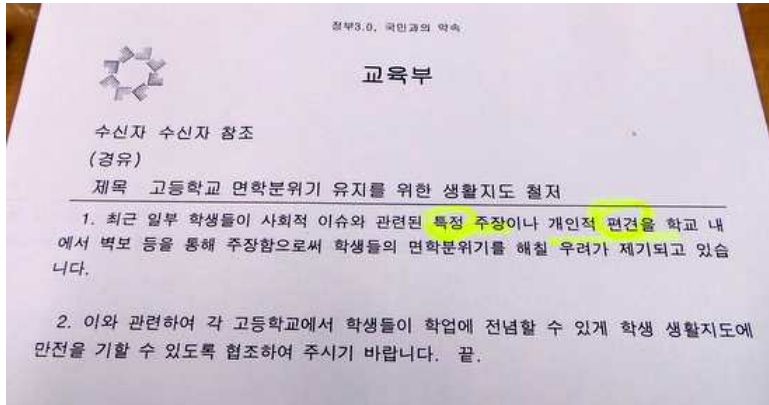
광주, 전라북도 등 일부 교육청들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공문을 전달하지 않고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학생인권 보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청들 역시 일선 학교들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적극 지도하고 대처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나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학교와 교육부 및 교육청들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인권침해 상황임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통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도록 각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별지 2>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문 이미지

(오마이뉴스 보도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9983)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경상북도교육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등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5693(2013. 12. 18.)호
2. 최근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주장이나 개인적 의견을 학교 내에서 벽보 등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문은 모든 고등학교에 동시 발송됩니다.

<별지 3> 서울 개포고등학교 침해 사례 진정 내용

진정인 및 피해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치적 기본권 '내나라'운동본부,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희망의우리학교

이름 : 박종하 생년월일 : 1996.02.04. 성별 : 남성 국적 : 대한민국

주소 : 서울특별시

연락처 :

◎ 대자보 철거 및 대자보를 이유로 한 징계 절차 진행

제가 2013.12.19. 저녁 6시 학교외벽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 다음날 학생들이 등교하기도 전에 약 아침 7시 30분경 대자보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대자보를 다시 받기 위해 '생활인성지도부' 문 앞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자보는 익명으로 썼는데도 저를 보더니 격양된 어조로 절 호명하고 교무실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공격적인 어조로 "왜 이런 걸 붙였냐!", "의도가 뭐야!"절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들어 나의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싶었다고 대답했더니 "사람모아서 뭐하려고 봉기라도 일으키게?" 라며 절 조롱했습니다.

또 글씨를 못 썼다, 내용이 이상하다, 글을 못 쓴다, 환경미화에 좋지 않다 등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신공격,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제 자보를 폄하했습니다.

내 사유재산권이 침해됐으니 누가 철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생들에게는 CCTV를 공개해서 안되고 또 공개해선 안 되는 이유를 밝힐 이유도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학교측은 CCTV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15조에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CCTV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CCTV담당자의 직무유기이자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23일 철거된 대자보원문과 탄압상황, 요구사항을 A4 두 페이지에 적어 총 600장을 인쇄해서 배포하려고 했으나,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받기 위해 생활인성지도부 부장 교사를 찾아갔으나 출장을 이유로 도장을 찍는 걸 자꾸 미루며 거부했고, 전 그날 인쇄물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24일 '학생 선동', '절차 없는 인쇄물 배포'를 명목으로 담임선생님을 통해 구두로 '대선도위원회'가 30일 열릴 것 이라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학교측은 '학생 선동'과 교칙에도 없는 '유인물 배포 절차'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대선도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것이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별지 4> 광주 금호고등학교 침해 사례 진정 내용

진정인 및 피해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치적 기본권 '내나라'운동본부,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희망의우리학교

이름 : 황법량 생년월일 : 1995.03.12. 성별 : 남성 국적 : 대한민국

주소 : 광주광역시

연락처 :

◎ 대자보 게시 불허

12월 17일 A4 용지 4장에 적은 대자보를 들고 학생부에 게시를 허가해달라고 찾아갔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게시를 불허했다. 이후 교감, 교장 등과 면담을 했으나 학교 측은 '정치적' 내용이라는 이유로 대자보 게시를 계속해서 불허했다. 그런 과정에서 교사들로부터 여러 면박을 받아서 불쾌했고 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위축되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금호고등학교는 불허한 것이 아니라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내부 논의에 실체가 없다. 대자보 게시를 늦추라고 했는데 시간을 끌어 게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 게시를 허가제로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허가 절차를 거쳐 부착하기 위해 찾아간 경우에도 '정치적'이라는 등 내용을 이유로 하여 불허한 것은 학생들의 언론, 표현에 대한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